

구미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00. . .
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개정이유

○ 정부규제개혁완화의 일환으로 『규제개혁모델』에 의거 규제 완화

2. 주요골자

- 주민공개의 제한(제5조제2호 및 제4호 삭제)
제2호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, 정책에 관한 사항
제4호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시의 재정운영을
저해하는 사항

3. 참고사항 :

- 지방재정법제118조의3
-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- 규제개혁모델(2000. 4. 20)

구미시 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

구미시 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제5조제2호및제4호를 삭제한다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구 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주민공개의 제한)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.	제5조(주민공개의 제한) ----- ----- -----
1.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, 정책에 관한 사항	1. ----- -----
2. <u>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,</u> <u>정책에 관한 사항</u>	<삭 제>
3. 시설공사, 물품의 제조 및 구매, 용역에 관한 예산 및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 기밀에 속하는 사항	3. ----- ----- -----
4. <u>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</u> <u>재정이나 시의 재정운영을 저해</u> <u>하는 사항</u>	<삭 제>